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4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김태규 · 권영진
조지연 · 김태호 · 정동만
조은희 · 성일종 · 윤영석
구자근 · 나경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,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(안 제4 조제1항제8호가목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가목 중 “군인”을 “군인 또는 군무원(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1. ~ 7. (생략)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<u>군인</u> 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. (생략) 9. ~ 18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----- 가. <u>군인 또는 군무원(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9. ~ 1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